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25. 6. 13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27호로 2025년 5월 30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·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내 체육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관리·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
(안 제4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,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의9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5.6.3.~2025.6.10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

-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일부 개정(2023.9.14.)됨.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발의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4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- 주체: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- 요건: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- 의무 ·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· 안전관리책임자, 관리자 및 요원 대상 안전교육 · 체육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한 안전점검 실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필요 조치 의무를 규정 후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

-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서는 밀집 인원 기준을 1천명으로 정하고, 체육 행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는 바,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함.

○ 종합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(區)에서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그 내용, 수립 절차, 안전교육, 점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즉 우리 구(區)에서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 행사¹⁾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·안전요원은 체육행사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.
- 체육행사는 체육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공연장, 안양천(마라톤 등)

1) 【1천명 이상 밀집 체육행사 현황】

2025년도(5월말 기준) 1천명 이상 밀집 체육행사	
	1) 영등포구청장기 축구대회 - 장소: 양평누리체육공원축구장(야외) 2) 영등포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 - 장소: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(실내)
2024년도 1천명 이상 밀집 체육행사	
	1) 구민의 날 기념 안양천 힐링 걷기대회 - 장소: 안양천 신정교 일대(야외) 2) 영등포구청장기 축구대회 - 장소: 양평누리체육공원축구장(야외) 3) 협회장기 축구대회 - 장소: 양평누리체육공원축구장(야외)

에서도 개최될 수 있어 물리적 안전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짐.

참 고 자 료

1 국민체육진흥법

제13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,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·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

제11조의9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

-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”이란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.
-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체육 행사의 종목, 유형,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
 2.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
 3. 안전관리책임자(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안전관리자(안전요원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명 및 역할
 4.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
 5.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
 6.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
 7.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
 8.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
-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행사개최자”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-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 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 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